

## 키스낙스 회계담당자 및 세금징수관의 성명서

### COVID-19와 4월10일 재산세납기일에 관련된

공공건강의 위기로 부터 직접적인 영향으로 특히 고생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지금은 상당히 스트레스가 심한 시간이라고 이해합니다. COVID-19바이러스로 인해 영향을 받은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재산소유주들은 4월 10일 납기일까지 재산세를 지불 못할 경우 연체과태료를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.

주법에 요약된 바와 같이 4월10일 납기일을 연장시키는 권한을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그러나 재산세 납부일 하루 후인 4월 11일을 시작으로 COVID-19에 관련된 이유로 정시에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과태료 취소요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부처에서는 발발로 인해 영향을 입었다고 입증되는 사람들의 이런 요구를 진행시키기 위한 특수팀을 수립했습니다.

정시에 세금을 지불할 수 있는 모든 재산소유주들은 그렇게 하시도록 권장합니다. 이런 세입은 특히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운영되고 시민이 의존하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와줍니다.

카운티빌딩이 현재 이런 응급상황 동안에 시민에게 폐쇄되었으므로 직접 오셔서 지불할 수 없습니다. 그 대신 납세자들은 온라인, 전화 혹은 우편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으로 전자수표지불하는 것에는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. 온라인 신용/직불카드 거래는 카드지불기가 2.25 퍼센트 서비스수수료를 부과합니다.

가장 자주 물어보는 질문(FAQs)에 대한 응답을 만들어 두었습니다. [FAQs에 대해서](#)  
[여기를 클릭하십시오](#)

또한 납세자들은 지불방법과 몇 몇 다른 온라인 자가서비스 선택에 대하여 <https://ttc.lacounty.gov/>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. 납세자들은 추가정보를 위하여 (213) 974-2111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.